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1044 제출연월일 : 2024. 6. 27.

제 출 자: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위하여 종전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보고)"를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의 통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보고"를 "통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36조(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u>등의 보고)</u> 시·도지사, 시장·	<u>등의 통보)</u>
군수 또는 구청장은 문화체육관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시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에게 <u>보고</u> 하여야	<u>통</u> 보
한다.	